

10. 所得稅法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財政經濟院公告 第1995-100號 1995. 12. 13

1. 개정취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고,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주식은 제외)으로 정하고,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시기 등을 정함.
- 나.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저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 (1) 은행(신탁계정은 제외)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부금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축협이 취급하는 적금으로서 5년 내에는 원금을 인출할 수 없는 저축으로 함.
- (2) 최초 저축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저축기간을 연장하여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함.
- (3) 분리과세 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15%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고 종합과세를 받도록 함.

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5년 미만 저축성 공제상품의 공제차익에 대하여는 보험차익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로

하고, 보장성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공제료 불입액을 연 5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아파트입주 지체보상금은 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로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함.

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 요건은 삭제함으로써 거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

사.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토지 등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경매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이나 경매가액이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함.

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차. 부동산 양도 등기전 신고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로 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신고확인서를 즉시 교부하도록 하는등 부동산 양도 등기전 신고제도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방법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재

정경제원장관(참조: 소득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